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위원회구성)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 ~ 3(생략)</p> <p>제10조(<u>운영세칙</u>)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가정복지과장이</u> 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 ~ 3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<u>운영규칙</u>) (현행과 같음)</p>

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"산업과장"을 "축산과장"으로

하고,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중 "새마을과장"을 "지적과장"으로, "사회과장"을 "환경보호과장"으로 한다.

제10조 제2항중 "7일"을 "5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산업과장</u> 이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한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<u>새마을과장</u></p> <p>2. <u>사회과장</u></p> <p>3 ~ 7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) ①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<u>7일전까지</u>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축산과장</u></p> <p>.....</p> <p>1. <u>지적과장</u></p> <p>2. <u>환경보호과장</u></p> <p>3 ~ 7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5일</u></p> <p>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선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4조 본문중 “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”을 “서성대상,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”으로 하고, 단서중 “모범공무원포상”을 “서성대상, 모범공무원포상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 2(서성대상) 서성대상포상은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부문에 공적있는 자를 선발한다.

1. 충효열상(충효열부문)
2. 지역개발상(새마을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부

문)

3. 교육상(교육부문)
4. 문화상(문화부문)
5. 체육상(체육부문)
6. 봉사상(봉사활동부문)

제12조내지 14조를 제11조내지 제13조로 한다.

제15조를 제14조로하고 제목중 “(위임규정)”을 “(위임규칙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